

『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영길 의원 외 5명

2. 제안이유

올바른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,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·발전, 농어업 및 식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(안 제3조, 제4조)

다.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(안 제5조, 제6조)

라. 식생활교육의 평가(안 제7조)

마.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제11조)

바.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등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3. 4. ~ 3. 11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」은,
 -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상위법인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에 의거하여 시민의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,
 - 서구화되거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 및 식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.